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해식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